



# 관 세 청

수신 한국관세사회장  
(경유)

제목 과세·수출환율 개편 안내 협조 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세환율 및 수출환율(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개정)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(관세사)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과세환율(외국환매도율), 수출환율(외국환매입율) →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
- 시행일: 2022년 9월 18일
- 기타 문의사항
  - 제도: 관세평가분류원(042-714-7513)
  - 전산시스템: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(1544-1285) 끝.

관 세 청



관세행정관

손동희

행정사무관

박수경

심사정책과장

전결 2022.09.14.

양승혁

협조자

시행 심사정책과-2044

(2022. 09. 14.)

접수 2022.09.14.

(2022. 9. 14.)

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대전정부청사 1동(둔산동) / [www.customs.go.kr](http://www.customs.go.kr)

전화번호 042-481-7767 팩스번호 042-481-7869 / [legendhee@korea.kr](mailto:legendhee@korea.kr) / 공개